



대학원 출석 인정에 관한 내규

개정일: 2026.09.21.

제1조(목적)

이 내규는 「대학원 학칙」 제33조제1항에 따라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내규는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,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신청시기 및 방법)

-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확인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증빙서류 등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.
- 소속 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출석인정사유)

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인정 항목	인정기간 (공휴일포함)	수업형태별 가능 여부			증빙서류
		온라인강의		대면강의	
		실시간 화상강의	온라인 녹화강의		
▪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▪ 병역판정검사(의무복무기간 제외)	해당일	녹화영상 100% 시청 시 출석 인정	-	인정	· 관련 통지서
▪ 의무복무대체소집 (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된 소집 절차)	해당일	녹화영상 100% 시청 시 출석 인정	-	인정	· 관련 통지서
▪ 입원 기간 ▪ 법정감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	해당기간 (최대 4주까지 인정,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 실시)	인정	인정	인정	· 공통: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-입원시: 입 · 퇴원확인서 -격리시: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단서
▪ 조·부모(외가, 처가포함), 형제자매,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	7일 이내	인정	인정	인정	·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▪ 출산 (본인 및 배우자)	· 본인: 21일 이내 · 배우자: 7일 이내	인정	인정	인정	· 본인: 출산확인서 · 배우자: 출산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
▪ 여학생의 생리	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, 매회 하루만 신청가능	인정	-	인정	· 생리공결신청서
▪ 본인 결혼	7일 이내	인정	인정	인정	· 청첩장 및 혼인관계증명서
▪ 소속 단과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	해당기간	증빙서류에 따라 판단	증빙서류에 따라 판단	증빙서류에 따라 판단	· 관련 공식 증빙서류



제5조(관리)

- ① 소속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 후 소속 대학장의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.
- ② 승인된 공결확인서와 증빙서류는 소속 학과에서 해당 학기 종료 후 1년간 보관한다.

제6조(기타사항)

-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(총 수업일수의 1/2)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강의 담당교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. 단, 인턴십(30)과 인턴십(34) 교과목 신청자 중 「대학원 인턴십 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」 제2조③에 따른 해외파견 서류 제출 및 「대학원생 해외활동 신고에 관한 내규」 제4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고, 소속 단과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공결 출석인정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
- ②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.
- ③ 공결을 승인받은 학생에 대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강사는 학습자료 등을 제공하고, 예비군 훈련으로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.
- ④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장이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공포일: 2018.10.25.>
3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 <공포일: 2020.10.30.>
4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 <공포일: 2021.02.24.>
5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 <공포일: 2021.09.16.>
6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 <공포일: 2024.03.13.>
7. (시행일) 이 내규는 전문 개정되었으며,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공포일: 2025.04.30.>
8. (시행일) 제4조에 대한 변경 내규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 <공포일: 2026.02.26.>
9. (시행일) 제6조에 대한 변경 내규는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 <공포일: 2026.05.29.>
10. (시행일) 제4조에 대한 변경 내규는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 <공포일: 2026.09.21.>